

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한)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이 규칙 시행으로 신설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조정되는 별표 2의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며, 2022년 6월 1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2의 행정사무관·사서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임업사무관·수의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기상사무관·보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약무사무관·환경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명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청 소속기관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관 정원 40명(3급 또는 4급 40명)을 심판장 정원 40명으로 전환하여 심판장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0841호, 2020. 7. 14.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해 특허청장 밑에 2022년 5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특허빅데이터담당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은 종전 인력(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특허청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을 종전의 직급(5급 1명)으로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환경부령 제873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환경부장관 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토양정화업의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23조의7제1항 및 영 제17조의4제1항·제2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토양정화업등록증(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23조의7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토양정화업등록증을 내줘야 한다.
- ③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23조의7제1항 후단 및 영 제17조의4제4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토양정화업 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2항에 따른 토양정화업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출입 검사 등)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26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하여 검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을 포함한 검사 계획을 피검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의 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를 받거나 출입 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8호서식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관리표에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18호서식 중 “제34조제3항”을 “제34조제2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토양정화업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등록 : 10일 변경등록 : 7일
------	------	------	------	-----------------------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1항·제3항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 ] 등록 [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 서류	1. 등록의 경우 가.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반입정화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도면 1부(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2. 변경등록의 경우 가. 변경하려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토양정화업등록증 1부	등록 10,000원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변경등록 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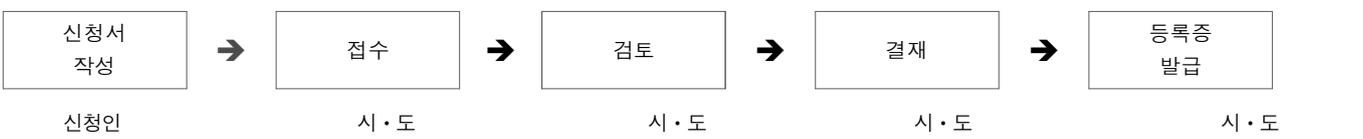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제2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제 호

# 토양정화업등록증

1. 상호(명칭):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 소재지:

(전화번호: )

4. 반입정화시설 소재지:

(전화번호: )

5. 장비 및 기술인력 현황

가. 장비:

나. 기술인력: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직인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행정처분사항>

일자	내용	확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토양정화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시·도지사의 관할구역 외에서 반입정화시설을 설치하여 오염토양을 정화하려는 자는 반입정화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양정화업의 등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고용노동부령 제288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직업안정기관”을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분사무소에에게 제출하여야”를 “분사무소에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각각 “지정직업훈련시설”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서”를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로, “발급하여야”를 “발급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직업훈련시설”을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다.

③ 법 제28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직업훈련시설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훈련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28조”를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증의 기재 내용”을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기재사항”으로,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는”을 “해당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해당 자격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자격증”을 각각 “해당 자격증”으로 한다.

제16조의2 본문 중 “법 제33조제2항”을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않는다”로 한다.

제20조의2 중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을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22조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